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 규칙

제 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연예술”이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을 말한다.
- ② “공연예술연습공간”이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공연예술연습공간을 말한다.
- ③ “대관”이라 함은 제시된 공간의 시설, 설비 등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대관자”라 함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담당자의 대관 승인을 받아 이 운영규칙을 인정하고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적용 범위)

- ① 이 운영규칙을 적용하는 공간은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내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1, 소연습실2 및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내 모든 제반 시설을 말한다.
- ②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에 관하여 다른 운영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사용 목적)

- ① 민간전문공연예술단체(인) 공연예술장르 연습 및 창작 활동
- ② 생활문화동아리(동호회), 비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공연예술장르연습 및 창작 활동
- ③ 공연예술 외 타 문화예술 장르 단체(인)의 활동
- ④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및 행사

제 5조(사용 조건)

- ① 시설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따른 시설 및 장치는 물론 운영과 관리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다.
- ③ 사용자는 본 대관에 대한 운영규칙 및 각 동의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대관(행사 등) 시 필요한 시설물 등의 설치·철수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⑤ 사용자는 본 대관에 대한 운영규칙 및 각 동의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일정 기간 공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6조(대관 범위)

- 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1, 소연습실2

② 부대시설 및 장비

- 1. 대연습실: 업라이트 피아노, 보면대, 의자, 책상, 음향기기, 무용 매트, 등
- 2. 중연습실: 업라이트 피아노, 무용바, 보면대, 의자, 책상, 음향기기, 전신거울 등
- 3. 소연습실1: 드럼, 보면대, 의자 등
- 4. 소연습실2: 보면대, 의자 등

※ 대관자가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대관 신청 단계에서 시설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제 7조(대관의 종류)

- ①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의 대관에 관한 일정 및 방법, 심의 기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 예술연습공간 지침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하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의 협의로 추가 및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의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내부대관(기획대관),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1. 내부대관(기획대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신청하는 대관으로, 무료대관 및 우선 사용권이 부여된다.
 - 2. 정기대관은 동부창고의 공고를 통하여 접수된 전문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의 안정적인 공연예술연습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수시대관은 내부대관(기획대관) 및 정기대관 이후 공실 기간에 진행되는 대관으로, 먼저 전문공연 예술단체(인)의 공연예술 연습을 위해 제공되며 그 외 생활문화동아리(동호회), 비전문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의 공연예술 연습 그리고 공연예술 외 타 문화예술 장르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8조(대관 시간)

- ① 대관 시간에는 실 사용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 ② 대관 사용시간 초과 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대관자에게 즉각 퇴실 요청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이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사용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 사용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예) 오전 10:00~13:00 > 10:30~13:30 불가) 단 부득이하게 사용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 ④ 대관 시간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1. 운 영 일: 화요일 ~ 일요일
 - 2. 운영시간: 화요일 ~ 금요일 10:00~22:00, 토요일~일요일 10:00~17:00

대관 시간		
오전	오후	저녁
10:00~13:00	14:00~17:00	18:00~22:00

제 9조(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 ①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의 대관 절차에 따라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대관 신청은 동부창고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다.

③ 대관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는 대관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구 분	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정기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관은 연 2회(필수) 이상 일정 기간 공모를 통해 접수 후 대관 심사를 거쳐 결정 - 정기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정기대관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관 심사 ▶ 승인(선정) ▶ 입금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관 신청은 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안정적인 공연예술연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으로 <u>전문공연예술단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정기대관 심사 대상에 포함, 소지하지 아니한 단체(자)는 결격대상</u> - 정기대관 신청은 다양한 공연예술분야 예술단체(인)가 사용할 수 있도록 1단체(예술가) 당 연간 최대 10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추가 이용 신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협의 후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업무추진 목적 공간 사용 요청 시 의무 사용 및 우선 사용토록 협조
수시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및 내부대관을 제외한 잔여(공실)기간에 신청 접수가 가능함 - <u>당일 대관 신청은 불가</u> - 사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수시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대관신청 내용은 담당자 승인 전까지 대관자가 수정 가능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서 작성 ▶ 공연예술연습공간 담당자 신청서 검토 ▶ 승인 ▶ 입금 ▶ 대관 확정 </div>

제 10조(대관승인 심사)

- ① 대관 심사는 제 4조 사용 목적에 부합 여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의 대관 심사기준에 의거 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적 공공성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통보한다.
- ② 수시대관의 경우 동부창고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공연예술연습공간 담당자가 검토 하며 대관 제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한다.
 - ※ **통합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신청 일시 확인 가능**
- ③ 정기대관의 경우 연 2회 일정 기간 공모를 통해 접수 후 대관 승인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대관은 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안정적인 공연예술연습 및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근거하여 전문공연예술단체(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가 없을 시 정기대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정기대관 심사 시, 심사위원은 운영기관별 내·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며(내부 2, 외부2), 심사위원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섭외 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3배수)로 구성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외부 심사위원을 선출한다.
 3. 정기대관 심사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에 의거 대관목적의 적합성, 신청단체의 전문성, 신청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특별히 대관목적의 적합성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공연예술단체(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결격 통보된다.
 4. 정기대관 심사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를 따르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의 후 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활동 실적, 단체 활동의 파급력, 기존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사용실적과 운영규칙 미준수 이력 등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을 추가하여 진행

할 수 있다.

5. 정기대관 심사 정기대관 심사 결과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및 동부창고 등 홈페이지에 별도로 알리지 않으며, 공연예술연습공간 담당자가 개별 통보한다.
6. 정기대관 심사 시 평균 평점 점수 70점 미만은 결격 처리된다.
7. 심사 결과 평균 평점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높은 순위의 신청자가 대관 시간 및 공간을 선점할 수 있으며, 평균 평점 점수 중복일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한 단체(자)를 우선하여 배정한다.

※ 정기대관 심사 후, 평균 평점 점수 중복일 경우 대관신청서의 이메일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

④ 수시대관 및 정기대관 포함, 모든 대관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대관 승인이 제한된다.

1. 공연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공연 연습' 외에 사적인 이익 창출(레슨, 마스터클래스) 등은 대관 불가
4.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 하였을 경우
5. 공간을 활용하여 단체(자)의 상업적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공연예술연습공간의 대관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금전적 대가가 있는 상행위가 포함된 모든 사업 및 활동은 대관 승인이 제한되며 적발 시 운영규칙 위반으로 간주 된다.
6.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8. 대관 신청 주체가 만 14세 이하인 경우
9. 대관서약서 작성(연 1회)을 거부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10. 대관 규칙을 미준수 한 경우 주최/주관이 동일한 유사 행사는 향후 1년간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1. 대관 승인 후 기한 내 미결제 시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대관 공간 사용이 불가하다.

제 11조(대관 취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면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즉시 철수시킬 수 있다. 발생 되는 제반 손실은 대관자의 책임으로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입은 손해(운영 및 관리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① 운영규칙 제10조 제4항에 해당할 때
- ②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③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④ 대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운영규칙 준수 서약서의 준수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 ⑤ 사용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⑥ 다른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음주 및 유해 행위 등 운영규칙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⑧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⑨ 기타 대관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⑩ 시설 결함, 내부사항, 자연재해 등 대관이 어려운 경우
- ⑪.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 내 대관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관 및 이용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자는 동부창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2. 당일 대관 신청은 불가하며, 사용 기자재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3. 대관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종료 시간 전 공간 정리 및 퇴실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대관료는 온라인 카드 결제를 통한 선불 결제만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5. 대관 시 공지된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이용자는 공간 내 설비나 기자재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간 내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간 내 취식을 일체 할 수 없다.
8. 공간 예약 후 미결제 및 무단불참 시 공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9.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수용인원에 따른 공간의 운영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 12조(운영규칙 위반 시 조치사항) 대관자가 본 운영규칙 제 10조, 11조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사용료 및 납부)

①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공간구분	대관료(부가세 포함)			
	오전 (10:00~13:00)	오후 (14:00~17:00)	저녁 (18:00~22:00)	전일 (10:00~22:00)
대연습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중연습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소연습실1, 2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 ②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사용료 납부는 **선불원칙**이다. 대관자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담당자의 대관 승인 후 동부창고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할 수 있다. 대관자는 대관 담당자의 최종 입금 확인 후 공연예술연습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35동 대관 신청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평일대관	신청	대관 희망일(사용일)로부터 최소 2일 전까지 신청
	결제	대관료 결제는 사용일 하루 전까지 완료
주말대관	신청	대관 희망일(사용일)이 해당하는 주차의 목요일까지 신청
	결제	금요일 오후 13시까지 대관료 결제

* 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대관 불가

제 14조(사용료 감면)

- ① 본 운영규칙 제7조 제2항의 '내부대관'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50% 또는 30%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의 감면은 대관 신청 시 신청자가 아래의 각호에 따라 할인율을 선택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통해 감면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할인이 이루어진다.
 1. 장애 및 탈북예술가 개인이거나 단체 전원이 해당하면 대관료의 50% 할인받을 수 있다.
 2. 단체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로 이루어진 때에는 대관료의 30% 할인받을 수 있다.

제 15조(사용료 환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 및 본 운영규칙에 따라 대관료 환불은 다음 각 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대관 환불을 원할 시 동부창고 홈페이지 대관 시스템

템을 통해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 ① 본 운영규칙 제 11조에 근거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대관료 환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대관 시작일 15일 전까지 100% 환불, 7일 전까지 50% 환불, 이후 환불은 불가하다.
 2.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환불이 이루어진다.
 3. 당일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

제 16조(시설 공간 관리의무 및 배상책임)

-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서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대관 기간 중 특별한 장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반입 및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내·외부 공용공간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반입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 및 철거요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운영규칙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⑤ 물품 및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의무는 대관자가 책임진다.
- ⑥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을 보게 하였거나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시설 공간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대관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부칙(2024. 12.)

제1조(시행) 본 운영규칙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